서울교육대학교-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

인성·문화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양 기관의 우호협력 및 인성교육진흥을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서울교육대학교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.)은 상호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건전한 인성함양과 문화진흥에 기여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.

제2조(원칙) 양 기관은 호혜평등의 원칙하게 양 기관의 각종 제도를 존중하며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한다.

제3조(상호협력 범위) 양 기관은 아래의 업무를 추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학문적 식견, 다음에 대한 배려, 공동체 의식 및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휴머니즘에 바탕한 자기주도적인 시민성을 가진 인재 양성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상호교류
2.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의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선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여
3.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리더십 항양 프로그램 운영 협력
4. 서울교육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연수 시 선비문화수련원의 협력 및 지원
5.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실무위원회) 협약서에 명기된 협력 사업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협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5조(비밀유지의 의무) 양 기관은 협약내용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등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,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, 배포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협정의 효력)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지속하되,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협약내용을 변경 할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다.

제7조 본 협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
2021년 12월 1일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임채성

임 채 성

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
원장 김종길